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5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정청래·송갑석·오영환

최혜영•박성준•김영배

장경태 • 윤건영 • 김민철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16세 미만 청소년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대회 등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u>다만, 16세 미만의</u>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
	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u>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